

의안번호	2204223
의 퇴 인	한정애 의원
회 답 일	2024. 11. 8.
추계번호	24A399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9조(기금의 사용)	○ 기금의 용도에 “제72조의3에 따른 가공전선로 정비 사업”을 추가함(제11호의2)	의무규정
2	안 제72조의3(가공전선로의 정비의무)	○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기통신사업자”라고 한다) 및 관련 기관은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 정비사업에 시행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함(제3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49조(기금의 사용)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72조의3(가공전선로의 정비의무)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가공전선로 정비사업에 시행되는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전기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분담하고 있는 가공전선로 정비사업에 대해 국가도 비용을 부담하고 그 재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하는 내용임(안 제49조 및 제72조의3)
 - － 현행법 제72조의2¹⁾에 따라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가공

1)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

전선로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고 있음(산업통상자원부의 “가공 전선로 지중화사업”)

- 개정안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라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총 재정소요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등의 부담비율이 달라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보조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가공전선로 정비사업의 규모를 추정하여야 하나 동 사업은 개정안 제72조의3제2항에 따른 가공전선로 정비계획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등의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2023년 기준 시·도별 배전설비 지중화율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은 21.3% 수준임

[표 1] 시·도별 배전설비 지중화율 현황(2023년)

(단위: %)

시·도	지중화율	시·도	지중화율	시·도	지중화율
전국	21.3	대전	57.6	전북	12.4
서울	62.2	울산	29.3	전남	9.3
부산	45.3	경기	32.4	경북	7.8
대구	32.5	강원	11.2	경남	13.4
인천	47.1	충북	13.0	제주	20.9
광주	39.1	충남	12.5	세종	46.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또한,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실적 및 소요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²⁾

[표 2]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실적 및 소요 예산(2011~2024년)

구 분	사업건수 (건)	선로길이 (km)	투입예산(억원) ¹⁾				
			국비·지방비			국비·지방비 외	합계 (A+B)
			국비	지방비	소계(A)	한전(B)	
2011년	75	96.4	0	537	537	537	1,074
2012년	56	47.8	0	344	344	344	688
2013년	87	102.2	0	653	653	653	1,306
2014년	91	66.0	0	618	618	618	1,236
2015년	116	105.5	0	796	796	796	1,592
2016년	160	126.4	0	1,223	1,223	1,223	2,446
2017년	146	115.0	0	1,200	1,200	1,200	2,400
2018년	114	85.2	0	854	854	854	1,708
2019년	87	65.8	0	638	638	638	1,276
2020년	213	156.1	0	1,673	1,673	1,673	3,346
2021년	209	162.3	120	1,729	1,849	1,850	3,699
2022년	162	99.1	343	1,299	1,642	1,416	3,058
2023년	76	53.7	325	670	995	825	1,820
2024년 ²⁾	65	40.3	261	463	724	582	1,306

주: 1) 전력설비 지중화 소요 예산 및 통신설비 지중화 예산을 제외한 금액

2) 2024년 실적은 7월 31일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Ⅲ. 부대의견

□ 없음

2) 동 현황은 통신설비 지중화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통신설비 지중화의 경우는 전기통신사업자도 비용을 부담한다.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